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64호로 2022년 11월 10일 신흥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11.9.~11.14./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임.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시행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관련 보건의료사업 추진,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보건소, 영등포경찰서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 ○ 검토 결과

-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구민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마약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2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